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2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3. 6. 15.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3. 5. 19.
- 회부일 : 2023. 5. 25. (의안번호 : 23-88)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상위법령 명칭 수정(안 제1조)
- 나. 전자이미지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주체를 구분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
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29조제2항
- 입법예고: 2023. 4. 13. ~ 5. 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가. 주요내용

- (안 제1조)에는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으로 수정하는 내용임.
- (안 제10조)에는 “전산정보과장”을 “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”으로 하고, “제공”을 “관리”로 하며, “한다.”를 “하며,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공인등록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.” 는 관리주체를 구분하는 내용임.

나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(공인)

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(公印)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29조(등록)

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.